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방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등 지뢰대응활동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뢰 등 탐지·제거를 대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인력 및 자본 등과 지뢰 등의 탐지·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 등 탐지·제거를 위해 지뢰 등 탐지·제거를 실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뢰대응활동위원회 및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2월 20일까지로 하고, 지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인천광역시 부시장 및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정함.

- 2)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해당 기관과 시·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지뢰 등 탐지·제거의 대행 요건 및 대행 절차·방법(안 제9조 및 별표 1)

- 1) 지뢰 등의 탐지·제거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뢰 등 탐지기 등의 장비, 관리자급 인력 1명 이상 등의 인력,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상시 운용하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 2)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제거를 대행하게 하려면 대행지역의 위치·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행자에게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지뢰 등 탐지·제거 업무 담당자 등 교육훈련의 내용(안 제11조)

지뢰 등의 탐지·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군무원 및 대행 법인·단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뢰 등의 위험수준 평가에 따

른 조치에 관한 실습 등을 포함한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수행 실
습을 포함한 지뢰 등 탐지·제거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라. 지뢰 탐지·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의 절차(안 제12조)

-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제출
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
도록 함.
- 2) 국방부장관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3)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도
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1. 5. ~ 12. 16., 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제2호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 기한의 90일 전까지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 시행 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일부터 20일까지

4.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통보일부터 10일까지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지뢰대응활동의 시행 시기 또는 규모 등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키,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확정 기한의 90일 전까지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확정: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확정일부터 20일까지

4.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통보일부터 10일까지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산림청

9. 그 밖에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가. 인천광역시 부시장

나. 경기도 부지사

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2.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나.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 및 나목의 사람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활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

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방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

부대·기관에 소속된 사람(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합동참모의장 또는 소속 부대·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

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9조(지뢰 등 탐지·제거의 대행)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인력 및 자본 등”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지역의 위치·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준수사항
 - 가. 지뢰등의 탐지·제거 전에 수행할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 나. 지뢰등의 탐지·제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지뢰등의 탐지·제거 후 완료보고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 지뢰등의 탐지·제거 경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의 안전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 탐지·제거를 대행하

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뢰등 탐지·제거 대행계약의 해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등 탐지·제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부, 각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인·군무원으로서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에 따른 조치 및 응급의료에 관한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3조에 따른 지뢰등 탐지·제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활용한 지뢰등 탐지·제거 수행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등 탐지·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업무능력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 방법

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사유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 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 및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뢰제거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기관이 실시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교육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외의 지뢰대응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교육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별표 1]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인력 및 자본 등(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1. 장비	가. 지뢰등 탐지기 1) M14 대인지뢰 등 지표면하 15cm의 깊이에 위치한 지뢰등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10대 이상(금속 및 비금속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를 2대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지표면하 3m의 깊이에 위치한 105mm 포탄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2대 이상 나. 굴착기용 원목 절단기 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기, 각도기, 나침반 등 지뢰등의 기록 및 위치 표시를 위한 장비 라.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 마. 개인 방호용 장비(PPE)(운용하는 인원수의 1.2배 이상의 인원이 착용할 수 있는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바. 개인 간 무선통신을 위한 장비 사.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 및 탐지된 지뢰등의 표지물 등 지뢰등 탐지·제거 대상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아.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 탐지·제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2. 인력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후 지뢰등 탐지·제거 실무 경력이 2년 이상(현장에서의 지뢰등 탐지·제거 경력을 1년 이상 포함해야 한다)인 지뢰등 탐지·제거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인력 1명 이상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후 지뢰등 탐지·제거 실무 경력이 1년 이상(현장에서의 지뢰등 탐지·제거 경력을 6개월 이상 포함해야 한다)인 지뢰등 탐지·제거를 담당하는 팀장급 인력 1명 이상

	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지뢰등 탐지·제거를 담당하는 팀원급 인력 8명 이상
3. 자본	자본금 5억원 이상
4. 시설	법인 또는 단체가 상시 운용하는 사무실

비고

1. 인력란의 “지뢰등 탐지·제거 실무경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의 지뢰등 탐지·제거 경력과 지뢰대응활동 관련 그 밖의 업무 경력으로 구분한다.
2. 자본란의 “자본금”이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합친 금액을 말하고,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3. 위 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인력·자본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뢰대응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 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지뢰 등의 탐지·제거 업무에 착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50	175	200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150	175	200
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 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 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 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100	125	150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4호	200	200	200
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 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5호	200	200	200
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 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6호	200	200	200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법 제28조 제2항제7호	100	125	150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시설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895